

초과근무 관련 확인서 [사업주용]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소재지	(전화 번호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1. 상기인의 직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규정 적용 업종인 경우 또는 제63조의 적용 제외 업종인 경우 비해당)

2. 상기인의 퇴직일 기준 직전 1년 이내에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달에 대하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달아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①~③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①출퇴근 기록부 ②초과근무 명령서 ③초과근무 수당 지급 내역서

해당 월	시작일	종료일	소정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작성 예시

해당 월	시작일	종료일	소정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2018년 10월	10/9	10/13	40	56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

작성자 성명 : (서명)

사업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